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가정방문형 급여〕

2025. 6.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

1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부당사례

○○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수급자(보호자)가 전자태그(RFID)를 대신 찍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일에만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등 수급자 3인에 대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사실대로 급여제공기록지(RFID포함)에 작성(전송)하고, 이를 근거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제2024-295호(2024.12.31.)) -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본 자료에 표기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의미함.

2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부당사례

○○방문요양센터 대표이자 시설장인 A는 B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한 후, 미신고자인 A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B 요양보호사 명의 휴대전화로 전자태그(RFID)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11명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음.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2023.12.29.)~제2024-295호(2024.12.31.)) -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 원칙), 제16조(재가급여 제공 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3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기준 위반

부당사례

OO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1인에게 1개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수급자의 가정이 아닌 경로당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 '1인에 대한 전적 서비스'가 아닌 다수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최소** '120분 이상 최대 15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시간을 늘려 '18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RFID포함)를 작성(전송)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4.12.31.))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4 방문목욕 산정기준 위반

부당사례

○○재가복지센터는 C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급여 제공하였고, D 요양보호사는 시설장과 함께 수급자 2인에게 급여 제공하였으나 급여 제공하지 않은 E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급여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함.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또한,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2022.12.28.)~제2024-295호(2024.12.31.)) -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당사례

○○복지센터 F 사회복지사는 3개월('23.12.~'24.2.) 동안 타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업무를 매일 4시간씩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 충족하였고, G 사회복지사는 10개월('23.11., '24.5.~'25.1.)동안 본인 근무시간 중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업무를 월 1시간씩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기간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함.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제2024-295호(2024.12.31.)) - 제48조(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53조 (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6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 (방문상담 기준 위반)

부당사례1

○○방문요양센터 H 사회복지사는 1개월('22.7.) 동안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 가정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무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부당사례2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14개월('23.12.~'25.1.) 동안 월 1회 수급자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하였으나, 장보기 등 사유로 요양보호사 부재 시 방문하여 매번 만나지 못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속 요양보호사의 서명은 추후에 받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부당사례3

○○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급여 입소자 수를 51명으로 1차 원청구('24.3.1.)했다가 1명 추가한 52명으로 2차 원청구('24.3.19.), 1명 더 추가하여 53명으로 3차 원청구('24.3.25.)하여 급여비용 지급받음. 평균 현원 증가로 인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 차액 발생함.

적용 기준	방문요양급여 포함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함. **부당사례1** 사회복지사의 급여관리 업무는 고시 제57조제3항에 따르며, 가정방문급여기관이 가산 대상이 되는 직종의 근무인원 수에 따라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등 1인당 수급자 15명 이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부당사례2** 사회복지사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관련 특정수급자에 대해 3개월 연속하여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함. **부당사례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은 가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입소자 수가 변하면 가산금액이 변경됨. 입소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정되는 가산금 차액 발생함.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X (가산점수의 합/**입소자 수**) X 서비스유형점수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제2024-295호(2024.12.31.)) -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고시 세부사항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7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부당사례1

○○재가복지센터 프로그램관리자는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간 외 방문하여 프로그램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부당사례2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관리자는 수급자 1인에 대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에 프로그램관리자 업무를 미수행 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적용 기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함)가 제공하여야 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고시 제17조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제2024-113호(2024.6.27.)) -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